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9 선고 2018가단5367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2. D

변론 종결2018. 12. 11.

판결 선고2019. 1. 2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,123,825,139원 및 그 중 723,890,559원에 대하여 2008. 4. 17.부터 2008. 9. 26.까지는 연 21%, 2008. 9. 27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신영

별지